

의안번호	제 347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일 (제 279 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4월 일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
----------	------------

발의연월일: 2009. 4.

발 의 자: 민경환 · 박영웅 · 정운숙
권광택 · 심홍섭 · 이영복
이범윤(7 인)

1. 제안이유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 등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상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
- 나. 대상후보자의 선정기준 변경(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의안전문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다.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라.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협의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상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후보자)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분야) 대상 시장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신설>	제2조(시장분야)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상
제3조(대상후보자) <u>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u> <u>중소제조업을</u>	제3조(대상후보자) <u>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u> <u>중소기업을</u>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